

한국젠더법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년 1월 13일

개정 2012년 6월 30일

개정 2020년 1월 29일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젠더법학회 회원이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 연구윤리 위반행위 발생 시 이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제재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 그리고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따른 징계조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적용 범위)

- ① 본 연구윤리규정은 한국젠더법학회 회원 및 젠더법학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검증·제재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③ 학회가 젠더법학 원고모집 공고를 할 때에는 연구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 ④ 투고자는 한국젠더법학회 학회지 편집 및 간행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윤리 확인서를 원고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국젠더법학회 JAMS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고를 투고하면서 연구윤리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위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 29.>

제3조(연구윤리 위반행위)

-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란 젠더법학에 게재된 논문 기타 저작물 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논문 등의 내용에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타인의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등의 표절행위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2. 논문 등의 작성에 실질적인 기여 없이 작성자로 기재하는 경우
 3. 과거에 공간된 논문 등을 중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4. 논문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5.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드는 위조행위를 하는 경우
 6. 연구 과정, 연구 재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변조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② 본 규정에 의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의 대상이 되는 논문 등은 학회지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4조(출판 업적의 명기)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연구나 저술(번역 포함)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경우 저자로 포함하기보다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5조(연구물의 중복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6조(인용 및 참고 표시)

① 저자가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학회 부회장 중에서 학회장이 정하는 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학회 회장이 학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학회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 1. 29.>

③ 위원이 연구윤리 관련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1. 29.>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①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제보 등이 있는 때. 단, 그 내용으로부터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학회지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회원 10인 이상이 서면으로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때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 위반여부에 대한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윤리규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1차 검토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3인에게 위촉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와 의결에 대하여 당해 위원은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행위가 보고되었을 때 그 사실을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의결에 앞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연구윤리 위반행위 의혹에 대하여 심의대상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의무)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자의 신원 등 연구윤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보고)

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회원에게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그 회원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회원은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보호)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제보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된다.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및 문제를 제보한 회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학회지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논문 등의 삭제
2. 학회지에 3년 이상 논문 등의 게재금지
3. 학회 홈페이지에 위반내용을 6개월간 공고
4. 판정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논문에 대해 공지
5. 한국연구재단 및 연구업적 관리기관 등에 위반내용을 통보 <개정 2020. 1. 29.>

③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학회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해당 회원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